

종사자 윤리 지침

세 주의료기

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하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지침을 정하여 준수한다.

(1)'윤리'의 정의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며, “도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지침”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주는 준칙을 말한다.

(2)종사자의 기본적인 윤리강령

1. 종사자는 케어자로서의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종사자는 초심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 가.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 나.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3.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4. 종사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 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 나.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 다.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 지도 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5. 종사자는 업무에 관련하여 수급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가. 센터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 나. 종사자는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종사자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 가.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 나.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 다.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 라.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 마.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 바. 수급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 사.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아.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3)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 가. 서비스 제공시 각 수급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 나. 수급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다. 서비스를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 후 실행한다.
2.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가. 종사자와 같은 종교를 가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에 말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가. 수급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변경 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 나. 수급자 앞에서는 피로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다. 수급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라. 수급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 마.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 바.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 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나. 종사자는 수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중대한 상황 외에는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5.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 가.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나.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나. 수급자 혹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4)전문직으로서의 윤리

1.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5. 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기관에 대한 윤리강령

가.직원은 기관의 정책과 사업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직원은 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직원은 기관의 재산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민간자원을 모집하는 등 기관의 이익 창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라.기관은 직원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개개인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마.기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사.기관과 직원 간에 정기적인 대화와 미팅을 통하여 사업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상호공유한다.

아.기관은 직원의 독창적인 사고와 자율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 계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자.기관은 개인의 종교와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며, 사생활을 보장한다.

차.기관은 직원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적용하며 기준과 무관한 출신지역, 학교, 성별, 연령, 외모 등의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